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2월 25일
- 회부일자 : 2011년 3월 3일

3. 제안이유

-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왔으나,
- 도정배심원제의 기능을 포괄하고 도의 주요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도정 정책자문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이번 폐지조례안은
 - 충북도 주요 정책의 입안이나 정책결정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정책자문단 조례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, 시행함으로써
 - 기존에 운영돼 오던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도와는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.